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4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1. 9. 15.(수) 10:00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김 현 부위원장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안형환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제4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1년도 제4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전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은 속기록 작성 및 위원님 확인이 끝난 후 차기 회의에서 접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의결안건 다>는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의 건'은 안건논의는 공개로 진행하되, 사업자 의견청취는 영업비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로 진행하고 나머지 <의결안건>은 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전기통신사업자 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에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21-41-122)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가> “ 「전기통신사업자 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에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춘환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전기통신사업자 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에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동 고시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부당성 판단기준과 관련된 예외사유를 개정하는 등 규제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지난해 10월 개정안을 위원회에 보고드린 이후 행정 예고 및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공정위가 반대의견을 제출하였고, 규제위 회의를 주관하는 국무조정실이 부처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규제위 회의 안건으로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고시개정 절차가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말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완료하여 규제위 심사를 통과하였고, 이에 오늘 회의에 고시 개정안 의결을 주문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협의과정에서 개정안 보고 때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 중 행위주체의 상대방을 전기통신사업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이번 고시 개정 추진 내용에서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3쪽 주요내용입니다. 이번 고시 개정의 기본적인 취지와 내용은 부당성 판단의 예외 사유를 구체화·명확화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과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현행 예외사유와 개정안을 대비한 <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시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사유 중 '행위주체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경우'는 불명확성의 정도가 과도하고, '해당 전기통신 분야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경우'는 거래 관행 자체가 부당한 경우는 예외로 고려되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관련 내용을 삭제코자 합니다. 실질적인 이용자의 이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와 전체 이용자의 편익이나 후생증대 효과가 큰 경우는 실질적인 전체 이용자의 편익이 큰 등의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전체 이용자의 편익 및 후생증대 효과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및 다른 서비스 이용자의 이익 침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즉 이익과 침해를 비교형량하는 방식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전기통신사업자의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한 경우는 통신장애 대응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신규서비스 출시를 위한 불가피한 조건 또는 제한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 기간이 광범위하므로 한정된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경우로 명확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행위주체가 안정적인 사업 지속을 위해 사회통념상 시장질서를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필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경우 등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4쪽 향후 계획입니다. 의결 이후 9월 중 고시 일부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즉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별지]의 동 고시 일부개정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작성 10월에 개정 초안이 보고가 됐던 것이지요?

○ **배춘환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예.

○ **김효재 상임위원**

- 거의 1년 걸렸는데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공정위가 상당히 의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다?

○ **배춘환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위주체의 상대방을 전기통신사업자로 이 고시는 제한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위원회 보고드렸을 때는 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행위주체의 상대방을 제한하는 내용을 없애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이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반대의견을 제기했었는데, 그 이유는 “상대방 규정을 삭제해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업자까지로 해석하면 전기통신사업자와 일반사업자 간 거래, 예를 들면 배달앱과 음식점, 오픈마켓과 입점사업자 이런 등등의 단계에 대해서까지 방통위가 규제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은 공정거래법과 중복된다. 그러니 이것을 전기통신사업자로 제한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고시 개정안에 반영된 내용, 즉 부당성 예외사유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도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공정위는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개정안이다”라는 의견을 줬었는데 그것은 국무조정실과 협의과정에서 법제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협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공정위가 반대한 것은 공정위의 권한이 침해당한다고 봐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 배춘환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공정거래법과의 중복성 때문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의미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중복성이 있었습니까?

○ 배춘환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예.

○ 김효재 상임위원

- 중복성이 있었다고요?

○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

- 사실 공정위 주장은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자 이외의 사업자, 또는 이용자까지 확대하는 것을 전제하고자 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공정위 주장 자체가 저희는 옳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정위가 규개위를 통해 워낙 세게 주장하고 규개위는 “일단 합의해 와라, 합의하지 않으면 통과를 못 시킨다”라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일정 부분을 저희가 빼고 이번에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사항이긴 했습니다만 공정위 주장 자체가 저희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약간 아쉬운 점이 있는데 저희가 법 집행 과정의 명확성을 높였다는 부분에서 동의하고 원안 개정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예외사유 중 불명확성의 정도가 과도한 내용 이런 것들을 삭제하고 여러 부분에 걸쳐 구체화 하는 아주 타당한 내용들을 잘 정리했습니다만 부처 간 조정 과정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사무처에서 열심히 1년간 잘 대응하고 노력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내 저는 결실을 보게 된 것으로 보는데,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저는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앞서 지적이 있었지만 과정은 복잡했었습니다. 어찌됐든 규제의 명확성, 또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전기통신사업자 간 부당한 행위의 예외기준을 체계화·합리화하려는 개정안으로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이 확대되고 법 집행의 명확성과 효율성이 제고가 기대되어 원안에 동의합니다. 1년간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느라고 사무처가 수고가 많았으며, 이 과정에서 행위주체 상대방을 사업자만으로 한정할 조항을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난 것은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아쉽습니다. 인앱결제 강제를 방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통과되어 시행되었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고, 플랫폼에서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상호 보완을 통해 이용자 권익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거래와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또는 불합리하거나 이용자를 기만하는 행위 또한 증가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인 만큼 규제에 대한 찬반 의견도 다양하고 산업과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도 필요합니다. 관련 현황 파악 및 제도 연구를 통해 구성원들이 상생할 수 있고 건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원안에 동의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습니다.

나.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2021-41-123)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나>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입니다. <1> 의결주문,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심사 기본계획’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경기지역 신규 라디오방송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 주요 경과입니다. 2021년 6월 25일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정책방안 마련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고, 8월 4일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여부 및 선정 정책방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별지]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심사 기본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① 개요입니다. 경기도를 주된 방송구역으로 하는 신규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 기본계획 마련입니다. ② 신규 라디오방송사업자 허가 개요는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대상 방송구역은 경기도, 인천광역시이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강화, 옹진군은 제외되며, 방송국 주파수는 99.9MHz이며, 방송보조국은 95.5MHz, 100.7MHz입니다. 방송사항은 방송사항 전반(종합편성)입니다. ③ 신규허가 절차입니다.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심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공고

및 신청서 접수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심사 및 청취자 의견수렴을 거쳐 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사결과 발표 절차로 진행됩니다. ④ 신규사업자 선정 심사 기본계획(안)입니다. 핵심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 심사 기본방향은 신청 사업자 간 비교심사 평가 등을 통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 방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부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 11인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다음 심사위원회 구성 절차는 심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심사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심사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심사위원 구성을 위해 관련단체 등으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심사위원회 위촉기준과 결격사유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위원회 운영입니다. 기본방향은 선정 여부, 선정 조건 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의견을 반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하며, 심사위원회의 임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세부심사평가지침(안) 및 세부사항 의결, 심사항목 등에 대한 세부심사 평가, 신청 사업자의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청취, 심사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사의견 제시 등입니다. 다음 심사평가 방안입니다. 평가원칙은 허가신청서 및 의견청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항목에 대하여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전원이 평가하며, 평가방식은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계량 평가는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객관적·정량적 기준에 의한 평가점수를 반영하며, 비계량 평가는 수, 우, 미, 양, 가로 등급을 부여한 후 각 등급별로 평점을 환산하여 부여하며, 적정/부적정 여부만 평가하는 경우 적정은 해당 항목 배점의 최고점수, 부적정은 최저점수를 부여합니다. 비계량 평가 환산점수 기준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점수 산정입니다. 세부 심사항목별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평균을 집계한 최종 심사평가점수를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정하고 이 합계를 신청 사업자의 최종 평가점수로 합니다. 다음 심사기준 구성 및 배점입니다. <1> 심사사항 구성, 심사기준의 대분류에 해당하는 심사사항은 방송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토대로 7개 사항으로 구성됩니다. 심사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사항별 배점입니다. 정책목표에 따라 주요 심사사항에 대한 배점 비중을 강화하고, 지역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신규 선정임을 반영하여 기타 심사사항별 배점을 했습니다. 지역 여론 다양성 확보, 안정적 방송 운영,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등을 위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조직 및 인력 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배점을 가장 높게 설정하였습니다. 총점은 1,000점 만점으로 하며, 세부심사평가방법은 심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심사사항별 배점(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을 200점 배점하고,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200점,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 및 타당성 150점,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200점, 재정적 능력 100점, 기술적 능력 100점,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 50점, 합계 1,000점입니다. 심사항목 구성 및 배점(안)입니다. 심사기준의 중분류에 해당하는 심사항목은 19개로 구성하였습니다. 대분류인 심사항목별 심사항목과 그 배점, 배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점 심사항목 선정입니다. 정책목표를 고려하여 3개의 범주를 마련하고,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심사사항을 3개 선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

관련 주요사항입니다. <1> 주요주요 등 관련 사항입니다. 주식회사 등의 경우 5% 이상 보유한 주주 등은 주요주주에 해당되며, 지분 5% 이상 보유 주주의 지분을 합이 51% 미만인 경우 지분 1% 이상 5% 미만을 보유한 주주 중 지분을 많이 보유한 주주 순으로 합계 51%까지인 주주를 주요주주로 보겠습니다. 주요주주가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의 경우 단체 자체를 평가 하되, 주요주주가 법인격 없는 단체인 경우 해당 단체의 출자자 전원을 평가합니다. 주요주주 평가 항목은 신청법인의 적정성,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도, 경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 재무적 우수성, 자금출자 능력 등을 평가하며, 신청인이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의 경우 신청인 자체를 평가하되, 출자자 등이 있는 경우 주요주주의 범위에 준하여 출자자를 평가합니다. 다음 최초 납입자본금 관련 사항입니다. <가> 인정 범위는 설립 예정법인의 경우 허가증 교부 직전까지 출자 예정인 금액으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이며,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의 경우 방송 운영을 위한 초기 출자 예정 금액 또는 출연 예정 금액(또는 이에 준하는 형태의 재원) 등, 즉 허가받은 날로부터 방송개시 후 1년간 초기 시설투자 및 운영, 프로그램 제작, 방송국 운영 등을 위한 비용 등입니다. 기존법인의 경우 자산 중 신규 방송사업을 위한 투자 금액 및 허가증 교부 직전까지의 유상증자 예정금액의 합계이며,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의 경우 방송 운영을 위한 출자금 또는 출연금(또는 이에 준하는 형태의 재원)입니다. 평가 요소는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구성주주의 주금 납입 관련 계약서 등이며, 기존법인의 경우 유상증자 참여주주의 주금 납입 관련 계약서, 신규 방송 사업을 위한 투자금액에 대한 이사회 결의서 등이며,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의 경우 방송 운영을 위한 출자금 또는 출연금(또는 이에 준하는 형태의 재원) 교부 등 관련 의사결정기구 등의 결의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 관련 사항입니다. 최소 출연금 규모는 납입자본금의 5%를 하한선으로 설정하며, 5%부터 비율에 따라 차등 배점하도록 합니다. 다음 선정 여부 결정입니다.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을 획득하는 신청 사업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사업자를 신규사업자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경우 및 심사항목 중 중점 심사항목의 평가 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고득점자가 2개 사업자 이상인 경우 심사항목 중 중점 심사항목의 배점이 높은 항목 순으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자를 신규 사업자로 선정하며, 허가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가하도록 합니다. 선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없는 경우 제공모할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선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다음 세부심사기준·배점 및 평가요소는 세부 내용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오늘 의결하면 이것이 언제 공고가 나가게 되지요?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오늘 위원회에서 선정 심사 기본계획(안)을 의결하시면 실무적으로 사업자들 신청서 작성요령

부분을 정리해서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고하게 되겠습니다. 그 일정은 며칠 걸릴 것 같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구체적인 신청서 작성요령까지 한꺼번에 공고가 됩니까, 아니면 공고 후 그다음에 어떤 단계가 있습니까?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신청서 작성요령을 함께 공고합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이것보다는 조금 더 세밀한 작성요령이 되겠지요?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그러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방통위가 설명회를 개최하게 됩니까?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공고 나간 후 통상 5일 내지 일주일 지나서 신청 예정법인들을 대상으로 실무적으로 신청서 작성요령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매우 상세하게 꼼꼼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관심을 보이는 곳도 제법 여러 군데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경기도 라디오방송은 가청권이 굉장히 넓은 아주 중요한 방송사를 선정하게 되니까 사무처에서 꼼꼼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지난달에 밝힌 바 있는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 선정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서 이번에 3개 중점 심사항목을 따로 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가 연초에 공표한 일정대로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 공모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새로운 종합편성 지상파라디오방송에 대한 경기지역 청취자들의 열망이 크고 복수의 단체들이 신청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지난 8월 정책 방안 결정 이후 사무처에서 그동안 기본계획을 마련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 이전 사업자와 같이 자진 폐업하는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위원회는 재정적 안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신규사업자를 반드시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모절차와 심사 그리고 기본계획의 내용처럼 중점 심사항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경기지역 라디오 신규사업자 선정이 어려운 지역방송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보고를 잘 받았는데 경기방송이 폐업하면서 해고된 직원들에 대한 추후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공모할 때 심사기준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지요?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그 부분에 대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방통위가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사업자들이 필요에 따라 그리고 舊 경기방송 직원들이 예비 사업자별로 접촉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사업계획에 반영될 것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해서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알겠습니다. 선정방안의 목표와 취지에 따라 지역에 가장 적합한 방송사업자를 선정해서 경기지역과 인천 일부 지역 시민들의 청취권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이 안건 역시 위원님들 모두 원안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 (주)에스비에스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 (2021-41-124)

○ 한상혁 위원장

- 다음은 <의결안건 다>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사업자 측의 의견진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 내용 중 사실 관계에 해당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입니다. <1> 의결 주문입니다. 주식회사 티와이홀딩스에 대하여 <가>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한다. <나> [별지]와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한다. <2> 제안이유입니다. 방송법 제15조의2에 따라 (주)티와이홀딩스가 신청한 (주)에스비에스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 신청현황입니다. <가>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입니다. (주)티와이홀딩스는 2021년 4월 30일 (주)에스비에스 최다액출자자인 SBS미디어홀딩스(주)를 합병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고, 2021년 5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최다액출자자 (주)티와이홀딩스 개요는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진 경과입니다. 2020년 6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SBS미디어홀딩스(주)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한 바 있고, 같은 해 9월 1일 (주)티와이홀딩스가 설립되었으며, 올해 2021년 8월 30일 (주)에스비에스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6일부터 8일까지 (주)에스비에스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구성은 변경 승인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송·미디어, 경제·경영·회계, 법률, 시청자 분야의 전문가 6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심사위원회 구성 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 항목은 방송법 제15조의2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심사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심사위원회 심사 의견입니다. 심사위원회는 신청인인 (주)티와이홀딩스가 제출한 (주)에스비에스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변경 승인 신청서, 사업자 의견청취 내용,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 당시의 승인 조건 내용 및 이행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심사위원회는 신청인이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의 권익보호 등의 측면에서 방송법상 최다액출자자의 자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청인이 SBS미디어홀딩스(주)를 흡수·합병으로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소유제한 문제를 해소하는 지배구조 개편 방안 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작년 6월 1일 사전 승인 시 부과한 조건이 이행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 지주회사 내 방송 부문의 독립성 확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확립 방안 등이 미흡하고, 최다액출자자로서 SBS 지원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점은 보완할 필요가 있어 관련한 승인조건 및 권고 사항 부가를 건의하였습니다. 이하 검토의견 내용은 의견청취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렇게 하시지요. 보고내용에 대해 의견청취 전에 확인하시거나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주)티와이홀딩스 최대주주에 대한 의견청취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의견청취가 종료된 이후에 다시 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 10시 32분 】

(주)티와이홀딩스 최대주주 의견청취 (비공개)

【 11시 30분 】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상정안건 논의를 위해 회의를 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이어서 사무처 보고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신청인의 최대주주 의견청취를 하셨습니다. 의견청취 내용을 정리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추가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추가로 받아서 다음 차 회의에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고 이 안건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안건은 추가적인 추가적인 논의 그리고 자료 제출을 위해서 차기 회의에서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의결을 보류하고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7.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기 회의는 9월 23일(목) 오후 3시 30분에 개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1년도 제4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30분 폐회 】